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훈의자부사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병무상담 척척~ AI 챗봇 '아라'와 함께하는

병역이행 길라잡이



병무청

CONTENTS

들어가기 전에	04
알아두면 유익한 제도	05
병역이행 우대 지원정책	09

01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는 어떻게 받을까?	16
질병 발생·악화로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을 수는 없을까?	19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도입	22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운영목적은?	23

02 현역병 입영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26
대학생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언제 입영하는가?	27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입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28
현역병 입영시 주의할 사항 및 준비물은?	29
현역 모집병의 경우 “모집하는 분야”는?	30
현역 모집병의 지원방법 및 절차는?	31
‘취업맞춤특기병’이란?	32
‘카투사’ 지원 방법은?	33
현역병 입영한 사람이 귀가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34
현역병 입영한 사람의 훈련기간과 부대배치는?	35
입영 후 아들이 군사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35
입영 후 첫 면회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36
특수병과(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하는 방법은?	36

03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이란?	40
사회복무요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41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절차는?.....	42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44
질병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46
사회복무요원과 개인정보보호	47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기준과 복무기관은?	49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정보는?	50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은?	51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전직”은?	52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사유는?.....	53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자격 및 편입절차와 복무기관은?	54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은?	55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는?	56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사유는?	57

04 대체역

대체역 편입 신청방법은?.....	60
대체역 편입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61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은?.....	62

05 병력동원훈련

병력동원훈련은?	66
----------------	----

06 기타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란?	70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제도란?	72
국외체재자 전자민원 출원제도란?.....	74
병무청 행정서비스 현장	75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75

들어가기 전에

병역의무 이행은 어떤 과정을 거칠까?

	18세	19세	20~30세	31~40세	45세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의무 발생				전시 등 병역의무 기간연장 (45세)
병역판정 검사		병역판정 검사			
징·소집 복무		19~37세까지 징·소집 입영 (36세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예비군 복무		예비군편성 병력동원(훈련)소집			

병역의무 이행은 어떻게 할까?

- 복학시기를 맞추기 위한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자세한 사항은 26페이지 참조)
 - 매년 7월~12월 중 병무청 누리집에서 다음연도 입영일자 본인선택 3회 실시
- 나의 전공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현역병 모집” (자세한 사항은 30페이지 참조)
 - 매월 병무청에서 각 군별로 모집, “병무청 누리집 초기화면의 군지원(모병) 안내” 활용 지원
- 석사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은 “전문연구요원”편입 (자세한 사항은 49페이지 참조)
 - 편입절차 병무청 누리집 활용
-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은 “산업기능요원”편입 (자세한 사항은 49페이지 참조)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기술자격증 필요 없음/단, 정보처리분야의 경우 별도 자격 요건 필요)
 - 편입절차 병무청 누리집 활용
- 보충역 처분자는 “사회복무요원”복무 (자세한 사항은 40페이지 참조)
 - 매년 11월~12월 중 병무청 누리집에서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를 미리 받아볼 수 있을까?

-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군특기 매칭, 상담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 참조)
- 군 생활 및 군 복무 중 자기개발에 대한 정보 제공
- 군 보급품 전시, 전투식량·군 장비 등 모의 체험

알아두면 유익한 제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입영 전 병역의무자 자신의 적성·전공 등을 고려하여 군 복무 및 전역 후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상담·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목적은?

-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여 병역의무자 지원 (입영 전/병무청)병역진로설계 → (복무 중/각 군)경력개발 → (전역 후/고용부 등)취업지원

↳ (서비스 내용) **맞춤 병역진로상담** + **군 생활 정보제공** + **군 적응 체험 교육**

서비스 내용은?

직업선호도검사	직업-흥미유형 검사 실시(온라인)	
설명회	병역이행 절차, 군 생활 및 자기개발 정보제공	
병역진로상담	직업선호도검사 결과 활용, 군 특기 추천 및 1:1 진로 상담	
군 적응 체험·교육	군 보급품 전시, 전투식량·군 장비 등 모의 체험	

서비스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서울·부산·대구·수원·광주·대전·춘천·인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울산·창원·의정부센터는 '24년 7월부터 운영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누리집(www.mma.go.kr) » 병역진로설계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온라인서비스 신청 가능함

알아두면 유익한 제도

경제적·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등 지원

경제적 배려대상자가 병역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병역이행 동참 지원, 중증 질환자 등 신체적 배려대상자의 병역감면 절차 간소화로 편의 제공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

지원과제	지원대상	신청대상(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생계급여 수급자	모집병 지원하는 현역대상 • 육군 : 기술행정 • 해군 : 기술/동반입대/ 복무지역선택병 • 해병 : 기술/동반입대/ 직계가족복무부대병 • 공군 : 기술	가산점 4점 부여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대상여부 확인신청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기초생활 수급자	20세(고졸) 또는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24년 2월~12월 중 입영희망월 반영 (신청기간 1~4월)	
우선 위탁검사 실시		병역판정검사 시 질병사유 서류보완 대상	우선 위탁검사 실시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위탁검사 의뢰
사회복무요원 검직허가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검직 허가	복무기관에 서류제출 (검직허가신청서, 수급자격 증빙서류)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우선순위 부여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학력별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일학습병행자격증 보유(예정) 병역지정업체 종사자 *세부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은 매년 5월 고시를 통해 확정	현역병 입영대상 별도 배정	병역지정업체에서 인원배정 신청 (매년 6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진단서 등 발급비용 및 여비 국고 지원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자	병역처분 변경여부 관계없이 지급	방문 또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민원 안내 →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대상여부 확인신청

신체적 배려대상자 지원

지원과제	신청대상	대상질환	지원내용	신청방법
약성혈액질환 등 중증질환자 서류심사 병역처분	병역판정 검사대상자 중 약성혈액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확진된 사람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림프종,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에디슨병,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자)	병역판정 검사 없이 서류심사로 병역처분	지방병무청에 서류제출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병무용진단서 • 의무기록지 등

*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소견에 따라 병역감면(신체등급 5-6급) 여부 결정

알아두면 유익한 제도

병무청 디지털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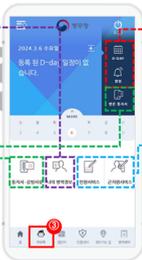
병무 상담부터 민원 신청, 병역사항 확인 및 각종 증명서 발급·보관 등 병역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제공

병역이행 관련 민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병무민원포털', '병무청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민원 처리 결과 및 병역 사항, 각종 통지사항도 확인 가능합니다.

* 병무민원포털 : mwpt.mma.go.kr

<병무청 모바일 앱 주요 기능>

- 
- ① 병역사항 확인
 - 병역이행 일정
 - 군번 등 병역사항
 - 민원신청 내역
 - ② 통지서 등 발급
 - 통지서(16종)
 - 확인서 조회(3종)
 - ③ 편의서비스
 - 개인맞춤, 채용정보 안내
 - 챗봇 아라 연결
 - 병역이행 일정 안내
 - ④ 병무 민원신청
 - 각종 본인선택
 - 병역이행 연기원 신청
 - 국외여행 허가

* 서비스 설명 및 설치 방법



* 해외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나라사랑메일 인증, e-병무지갑 간편인증으로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모든 디지털 병무서비스 이용 가능

민원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어떻게 하나요?

챗봇 '아라'를 통해 민원 신청 절차, 병역이행 제도 등을 24시간×365일 상담받을 수 있으며, 로봇의 안내에 따라 대화형 민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별 병역이행 상태 및 특성(자격·면허·전공)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입영분야 추천 등 맞춤 상담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챗봇 주요 기능>

- 
- ① 병역 상담
 - 병역이행 안내
 - 진화/재팅상담 연결
 - ② 민원 신청(51종)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 각종 연기 신청
 - 국외여행 허가 신청 등
 - ③ 맞춤 상담(6종)
 - 병역판정검사 유무 확인신청
 - 입영분야 추천(현역모집사회복무 등)
 - 예비군 전역연도별 훈련 정보 등
 - ④ 통지서 발급(16종)
 - 입영소집 통지서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등

* 서비스 이용



* 접속채널 : 병무청 앱, 병무청 누리집, 카카오프러스친구

알아두면 유익한 제도

각종 민원서류나 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e-병무지갑’으로 병적증명서, 통지서 및 확인서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갑에 보관 중인 각종 전자문서는 병무청과 연계된 기관으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전역증 등 전자 신분증(4종)은 혜택·편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분 확인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e-병무지갑’의 간편인증을 이용하면 공동인증서 발급 없이도 병무청의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병무지갑 주요 기능>

① 간편인증 기능

- 병무지갑, 병무청앱
- 병무민원포털
- 사회복무포털

② 전자문서 발급(30종)

- 병적증명서
- 통지서(16종)
- 확인서(13종)



③ 디지털신분증 발급(4종)

- 사회복무요원증
- 전역증
- 병역증
- 병역명문가증

④ 혜택·편의 서비스(4종)

- 휴·복학 서비스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 알뜰폰 가입
- 영화·숙소 할인, E-러닝

* 서비스 설명
및 설치 방법



병역이행 우대 지원정책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지원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병역의무이행자에게 적금 만기해지 시 적금 입금액에 매칭하여 지급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 병역의무이행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출시한 자유적립식 정기 적금 상품
- 가입대상 :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병역의무이행자
 - * ('24. 6. 1. 가입자격 완화 예정) 잔여 복무기간 1개월 이상 가입 가능
- 가입한도 :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은행별 최대 월 20만원
 - * '24년 월 40만원 적금 입금 시 사회복귀준비금 40만원 지원
 - * 적금 가입시에만 혜택 지원, 적은 금액이라도 적금 가입 필요(한도변경 가능)
- 가입혜택 :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은행이자(5%내외)+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방법 :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후 은행 제출
 - ※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방법
 - 현역 : 부대 인사담당자 발급, 나라사랑포털 앱 신청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포털, e-병무지갑 앱 신청
 - 대체복무요원 :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신청
- 취급은행 : 14개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 * 은행별 우대금리와 조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에 확인 필요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이란?

- 사회복귀준비금 : 적금 입금액의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지원
 - * 매칭비율 : ('22년) 원리금의 33%, ('23년) 원리금의 71%, ('24년) 입금액의 100%

(예시) '24.1월에 소집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21개월, 월 40만원 납입 시= 약 1,719만원

- 원금(입금액) : 840만원	▶	① 만기 시	+	② 사회복귀준비금	=	약 1,719만원 자산형성
- 은행이자(5%내외) : 38.5만원		878.5만원		(매칭지원금) 840만원 * 입금액의 100%		

- * 기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도 '24년 입금액은 100% 매칭지원 (1% 추가이자 지원금 : '23.12.31. 입금액까지 지원)
- 지원시기 : 적금 만기해지 시 소집해제일(전역일)이 포함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할 경우 개인 계좌로 사회복귀준비금 지급
 - ※ 제출서류 : 병역증, 전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대체복무요원) 중 택1
 - * 적금을 만기해지한 다음달 25일에 지급 (예) 3월 만기해지 : 4월 25일에 지급
 - * 지급기관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국방부)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병역이행 우대 지원정책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추진

- 선정 대상 : '3대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
- 신청 기간 : 연중 접수
- 신청 방법 :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또는 병무청 누리집
- 결과 통보 : 신청한 다음 달 20일 이후 개별 통보
- 제출 서류 : 병역명문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병역명문가 선정 시 어떤 예우 혜택이 있나요?

- 병역명문가 시상식 및 증서수여식 개최
- 병역명문가 증서와 패, 병역명문가증 교부
-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병무청 누리집)에 영구 게시
- 전국 1,500여개 예우 시설 이용 시 이용료 감면 등 예우 제공

* 공·농원, 군 복지시설, 휴양림, 주차장, 보건소 진료비 감면 등

병역이행 우대 지원정책

사회복무요원 자기개발 및 지원

대학 원격강좌 수강 시 수강료·수수료 지원

- 복무 중 소속 대학의 원격강좌를 수강할 경우 수강료와 수수료를 지원
 - *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석이 가능
- 지원내용 : 원격강좌 수강료의 80%, 수강신청 수수료 전액 지원
 - * 전국 182여 개 대학, 학기당 6학점, 연 최대 12학점 이내
- 신청 및 지원 절차



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 복무기간 중 사회봉사·리더십 활동 등을 대학학점으로 인정
- 학점인정 참여대학 : 전국 50개 대학('24. 2월 기준)
 - * 학점인정 대학 및 세부 학점인정 기준 등 사회복무포털 공지 참고
- 학점인정 예시 * 대학별 학칙에 따라 인정기준, 인정범위 등 상이

구분	주요 내용	인정 범위(예시)
봉사활동	1365자원봉사 및 VMS 봉사 실적 (근무시간 외 봉사활동 실적)	1학점, 최대 2학점 (15시간/30시간당)
리더십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경험	1학점, 최대 2학점 (30시간당 또는 3개월 이상)

※ 사회복무요원 개인별로 대학 자체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인정

- 「학점인정용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병무청 누리집) → 복학 시 대학 제출
 - * (경력증명서 신청 시) 개인별 봉사활동 실적 서류 등 첨부 제출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

-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14. 1. 1. ~ 시행)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직장가입자로서 휴직 중인 사람
 - * '22년 이전 월 10만원 범위내, '23년부터 전액지원
- 본인 신청 없이 병무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지원대상 확인 및 자동 정산 처리
 - * (지역가입자) 매월, (직장가입자) 소집해제 후 직장 복직신고 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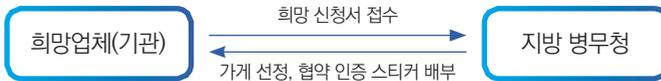
병역이행 우대 지원정책

나라사랑 가게 사업

- 병역이행을 응원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병역이행자 우대 사업

나라사랑 가게란?

- 병역이행자에게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 이용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
* 종류 : 음식점, 미용실, 카페, 헬스장, 병원, 안경점 등
- 혜택을 받는 사람 : 동원훈련 이수 예비군 및 모병예비군, 현역·사회복무요원 등 복무중인 사람, 병역명문가
- 할인율 : 업체 자율 선택(5%, 10% 등)
- 선정절차



- 나라사랑 가게 조회 방법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나라사랑 가게
* 지역별·업종별 선정업체 세부정보 확인

나라사랑 가게 선정현황

(‘24.2.29. 기준, 단위:개)

계	안경점	음식점	카페	병원	미용실	스포츠	관광시설	기타
606	249	118	40	73	64	19	16	27

자원병역이행자 예우 사업

- 영주권 취득, 질병 등으로 병역복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현역병 등으로 병역이행한 사람을 예우하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구현을 위해 2010년도부터 사업 시행
- 주요 예우제도

구분	주요 내용
입영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영희망시기 반영 등 병역설계 지원 •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 입영 전 초청 간담회 등 환송행사 실시(지방병무청)
복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병역이행자 체험수기집 발간·포상(격년) • 자원병역이행 모병병사 초청 격려행사 실시(연1회) • 병(兵) : 복무 중 정기휴가의 경우 왕복 항공료 지급(국방부, 최대 3회)
전역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병역이행 전역자 명예증서 발급 • 병역명문가 선정 시 예우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consisting of 20 lines.

01

병역판정검사

병무상담 척척~ AI 챗봇 '아라'와 함께하는 병역이행 길라잡이

 병역판정검사는 어떻게 받을까?

 질병 발생·악화로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을 수는 없을까?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도입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운영목적은?



병역판정검사는 어떻게 받을까?



☑ 병역판정검사란?

군 복무 가능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각 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현역·보충역 등 병역을 분류하는 검사

2024년 병역판정검사 대상

-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
- 2004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병역판정검사 신청방법

- 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일자(장소)변경

- ▶ 학생, 학원수강생(직업전문학교 재학생 포함), 직장인 등이 실거주지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검사장소 선택
- ▶ 병무청 블록체인 간편로그인, 공동(구 공인)인증서, 아이핀, 민간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본인 선택(변경) 가능
- ▶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검사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 전까지 신청 또는 변경 가능
- ▶ 공동인증서 등이 없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기간 : 2024.2.1.~12.6.

- 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지방병무청에서 임의로 날짜를 지정하여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

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 조회

- 병무청 누리집 → 병무인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조회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 병역판정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
 - ※ 본인선택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본인선택 시 입력한 이메일, 모바일 병무청 앱, 챗봇에서 확인



☑ 병역판정검사일 연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지정된 일시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병역판정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

연기사유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병역판정 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 병역판정검사일 5일 전까지

▶ **구비 서류**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 서식)
• 진단서 등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기관** •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또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24세 이하로 해외출국 중인 사람과 25세 이상으로 지방병무청(지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연기됨

☑ 병역판정검사 준비물

대상	지참물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전원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단, 수술 등의 경우는 비지정 병원 가능) 또는 참고되는 진료기록지 및 방사선 등 • 영상자료(CD 등)
수형자	• 판결문사본, 형확정증명서
전·공상자 가족	• 가족관계 등록부(제적등본) • 지방보훈(지)청장 발행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 자격 또는 면허증

☑ 병역판정검사 과정

병역판정검사 실시

- 각 과목별 신체검사는 기본검사결과와 “질병상태문진표” 및 “개인이 가져온 병무용 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신체 건강한 자와 정밀검사자로 구분, 실시
- 신체 건강한 자 : 기본검사 → 신체등급판정
- 정밀검사자 : 기본검사 → 해당과목 정밀검사 → 신체등급판정

병역판정검사 순서

병역판정검사 대상등록(사진등록) 및 신상명세서 작성 → 심리검사 → 방사선 촬영 → 임상병리검사 → 혈압 측정 → 신장체중 측정 → 시력 측정 → 각 과별 신체검사(안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신경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 신체등급판정 → 적성분류 → 병역처분

- 소요시간 : 3~4시간 정도(오전반 08:00, 오후반 13:00 시작)

☑ 병역처분기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 2023년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보류 등으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람은 종전의 병역 처분기준을 적용

- 전시근로역 : 전시에 소집되어 군사 업무를 지원
- 병역면제 : 군복무 의무 모두 면제(전시 포함)
- 재신체검사 : 해당 질병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받게 됨

🗣 용어설명

- * 임상병리검사 : 인체에서 혈액, 소변 등을 채취하여 생화학, 면역학, 뇨화학 분석 등 질병 유무를 진단하는 검사
- * 방사선 촬영 : 방사선 투과량 차이를 이용, 디지털 영상으로 만들어 신체골격계 및 연부 조직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검사



질병 발생·악화로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을 수는 없을까?



☑ 질병·심신장애 및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변경 신청

현역, 보충역 대상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해당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질병·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에 의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제한 : 동일 질병으로 6개월 이내 다시 신청한 사람,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등으로서 30세를 초과한 사람 등(수술 등 질병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병역 처분변경 접수 가능)

※ 사회복무요원 복무선택권 부여('21.10.14.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21.10.14. 부터 질병치유 사유 병역처분변경 신청 불가

신청방법

- 방문 : 지방병무청 민원실
- 인터넷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 → 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
-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공중보건기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장을 거쳐 신청
 ※ 단, 원하는 경우 직접 신청 가능

신청서류

-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민원실 비치)
- 병무용진단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병무청 지정병원 발행)

※ 비지정 의료기관 병무용진단서 발급 및 참조할 수 있는 경우

- ▶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병으로 입원 치료 중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7일 이상 입원치료
 - 의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1개월 이상 입원치료
- ▶ 비지정 의료기관 또는 동일한 의사에게 해당 질병으로 계속하여 통원치료 받은 경우
 -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3개월 이상 통원치료
 - 의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상 통원치료



- 신체검사 당일 수술기록지, 검사기록지, 방사선 등 영상자료(CD 등)와 같은 질병 증빙자료 지참
- 학력증명서(학력변동자에 한함)

용어설명

- * 지정병원 : 병무용진단서의 엄격한 발급을 유도하고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관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관리
- * 병무용진단서 :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병무청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질병상태와 향후 치료기간 등을 기록한 진단서

TIP

지정병원 목록 확인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재병역판정검사

의료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반영, 병역판정검사 후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병역법 제14조의2)

- 병역판정검사(병역처분)를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

TIP

연도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2007년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

- 2017년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 2022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18년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 2023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19년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 2024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바뀔 경우, 바뀐 병역처분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됨(보충역 → 현역대상 등)

-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더라도 입영일연기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입영일연기가 가능
- 국외체제 거주 사유로 입영 연기중인 사람은 연기사유 해소 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를 받기 위해 귀국해야 하는 것은 아님

재병역판정검사 제외대상

-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 또는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입영하지 않을 경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군간부후보생,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 전공상 또는 수형, 학력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검사시기

-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하여 실시함
※재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임의 지정 통지함

☑ 확인신체검사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의 진료 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실시

*관련규정 : 병역법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확인신체검사 대상 결정

- 경찰청 및 유관기관 자료 확인 결과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기록·치료내역 확인과 본인·관련자 면담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조사대상 결정

주요내용

- 병역처분 당시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 신체등급만 판정
-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경우 30일 이내 소명 기회 부여
-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 병역면탈행위가 확정된 경우는 기존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 안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처분 받은 사람이 신규 운전면허 취득,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합격한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처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
-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등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무청 입영판정검사제도 도입



☑ 입영판정검사란?

입영(소집)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제도로써 병무청에서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의 질병 및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입영(소집)일 전에 입영판정검사 실시

☑ 대상 및 시기 등

- 검사대상 :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
 - ※ 검사제외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등
- 검사장소 : 지방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
- 검사시기 : 입영(소집)일 14일 전~3일 전
- 검사내용 :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24년 하반기부터 마약검사 실시)
- 연기사유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애 등 가사 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시행계획

- 최초실시 : '21.8.4.부터('21.8.17. 이후 입영자부터)
- '24년도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 :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사단 전체
- 검사 인원, 예산·인력 등 고려, 연차별 확대 실시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7월
대상부대	2작사	2작사+지작사 일부(舊 1군)	2작사+지작사(舊 1, 3군)		전면시행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운영목적은?



☑ 특별사법경찰 제도

범죄 수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병무·산림·환경 등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일반 사법경찰관리보다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하게 한 후 검찰에 송치하게 하는 제도

운영목적

- 병역면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병무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병무청 직원이 병역면탈 범죄를 직접 수사하여
- 병역면탈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고 사회 전반에 병역의 자발적 이행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공정한 병역이행 제고

관련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41호 및 같은법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제38호
- 병역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제1항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훈령 제2019호, 2023.12.29.)

「특별사법경찰권」 적용 직무

-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 단속(병역법 제86조)
-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의 대리수검행위 단속(병역법 제87조제1항)
-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단속(병역법 제86조) * '24. 7. 17. 시행
-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 게시·유통 행위 단속(병역법 제87조의2) * '24. 7. 17. 시행
- 신체검사·징·소집 기피자 단속(병역법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 '24. 7. 17. 시행



02

현역병 입영

병무상담 척척~ AI 챗봇 '아라'와 함께하는 병역이행 길라잡이

-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  대학생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언제 입영하는가?
-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입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현역병 입영시 주의할 사항 및 준비물은?
-  현역 모집병의 경우 “모집하는 분야”는?
-  현역 모집병의 지원방법 및 절차는?
-  ‘취업맞춤특기병’이란?
-  ‘카투사’ 지원 방법은?
-  현역병 입영한 사람이 귀가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  현역병 입영한 사람의 훈련기간과 부대배치는?
-  입영 후 아들이 군사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  입영 후 첫 면회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특수병과(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하는 방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 현역병 입영 자격 및 시기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병역판정검사 받은 다음해부터 입영

(단, 각 군 모집병은 18세부터 지원입영 가능, 일반 징집병은 육군 지원자 부족 시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19세)에 예외적 접수)

- 대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대학별 제한연령 범위 내 입영 연기
- 다만, 대학 재학연기 중에 입영을 원할 경우 「다음연도 입영일자」 또는 「당해연도 입영일자」를 선택·신청하거나 각 군 모집병 지원을 통해서 입영 가능

☑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제도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과 '재학생/국외체재자 입영신청'이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으로 통합 일원화 됨

「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

- 대상/기간 : 올해 현역판정 받은 19세, 재학·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연중(7~12월)
- 방법(선착순)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 결정 : 입영일자 신청 즉시, 전산에 의해 부대까지 자동 결정
※ 27세 이상자와 입영일자 연기 만료자 등 직권 선발 대상자는 제외

「당해연도 입영일자」 선택

- 대상/기간 : 모든 현역병입영대상자 /연중(1~12월)
- 방법(선착순) :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현역/상근입영→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 결정 : 입영일자 선택 즉시, 전산에 의해 부대까지 자동결정
※ 다음연도 입영대상자인 19세 고졸자 및 졸업예정자는 다음해 5월 이전까지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미선택시 5월 이후 병무청에서 직권 입영일자 결정(28세 이상자는 선택 불가)

현역병 입영일자/부대조회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 → 입영일자/부대조회

현역병입영 통지서 받는 방법/시기

- 받는 방법 : 이메일, 모바일 또는 등기우편/받는 시기 : 입영일 45일전에 본인에게 송부

☑ 현역병 복무기간

- 육군·해병대 : 18개월, 해군 : 20개월, 공군 : 21개월





대학생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언제 입영하는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후 각급 학교별 제한 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이 연기됨

⇒ 입영 희망시 '다음연도 입영일자' 또는 '당해연도 입영일자' 본인선택원을 신청해서 입영해야 함

☑ 대상학교

- 고등학교(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 전문대학 및 대학 : 원경대학, 기술대학, 경찰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 등 포함
- 대학원(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원 포함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 재원 중인 자는 비대상

☑ 학교별 제한연령

고 등 학 교	대학		대학교					대학원					사 법 연 수 원
	2 년 제	3 년 제	4 년 제	5 년 제	6 년 제	의 · 약 학 계 열	석사과정						
							2 년 제	2년 초과 과정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위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의·치위학 전문대학원	박사 과정		
28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8세	28세	26세

※졸업, 자퇴, 제적 등의 사유로 연기사유가 해소되면 입영통지

☑ 입영연기 절차

-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교장은 시·도교육감)이 매년 3월31일까지 학적보유자 명부를 전산 송부하면 지방병무청장이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직권 입영연기 처리
⇒ 입영연기 처리 전 입영통지된 사람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연기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원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의2서식]), 재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학증명서 등)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제한연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령으로서,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함

☑ 대학생이 장기간 입영 대기하지 않으려면?

- 본인 선택으로 입영일이 결정 되었거나, 모집병에 최종 합격한 이후라도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휴학하여야 함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입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입영일자 연기제도

입영통지서를 받고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이 곤란할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입영 일자를 연기하는 제도
질병, 자격시험응시, 출국대기, 대학입시 등으로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간 범위에서 연기



자세한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확인은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현역병·상근예비역 → 입영일자 연기

- 입영일자 연기는 연기한 횟수, 기간을 합산하여 5회, 2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입영일자 본인선택의 경우 입영일자 연기가 일부 제한됨

취업 사유 연기

- 5인 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중인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 유해업소 및 단시간 임시직 취업자 등은 제외

연기원 신청방법

- 입영일 5일전까지 입영일자연기원서와 증빙서류를 해당지방병무청에 제출(인터넷, 방문, 팩스로 신청)

☑ 입영 연기제도

입영일자 결정 또는 입영일자 통지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재학생 입영 연기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휴학 포함)은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 내 졸업(수료)시까지 연기

국외 입영 연기

- 24세 이하자 : 6개월 이상 국외체재중인 경우, 24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 연기
- 25세 이상자 :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허가기간까지 연기. 단, 단기국외여행 허가자는 연기 비대상
- 국외이주자, 영주권자 등은 37세까지 연기

체육우수자 입영연기

- 대한체육회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추천 및 본인의 신청을 받아 27세까지 연기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 입영연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추천 및 본인의 신청을 받아 30세까지 연기





현역병 입영시 주의할 사항 및 준비물은?



☑ 주의할 사항

- 재학생은 입영하기 전 휴학(일반휴학→군 입영휴학) 및 휴대폰 일시정지 조치(입영통지서를 등기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복사하여 사용)
- 자대배치 후 희망자는 '장병 전용 휴대전화 요금제' 사용 가능(국방부 누리집 참고)
 - ☞ 장병 전용 요금제 사용 희망자는 복무기간 고려, 장기간 약정 요금제 가입 지양 권고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자는 자동면제되나, 군 복무기간 원금 납부는 면제되지 않으니 사전 조치필요(문의 ☎1599-2000)
- 입영 전 과도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 섭취 지양
 - 혈압 및 지방간 수치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본의 아니게 귀가될 수 있음
 - ※입영 전에는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
- 몸이 아픈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고 치료 후 입영하시기 바람
- 두발은 스포츠형으로 단정하게, 복장은 간소복으로 입영
- 군 생활에 필요한 물품(세면도구, 수첩, 전투화 깔창, 상비약 등)은 입영 부대에서 지급함
 - ※세부 품목은 각 군이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 준비물

- 입영통지서, 신분증, 나라사랑카드, 현역병 입영 안내문 뒷면의 6.25 전사자의 유가족 찾기 설문지
- 휴대폰 및 일체형 충전기(휴대전화 이용 희망시)
 - * 입영 후 신병 훈련기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 가능('23.7.3.부터, 주말 및 공휴일 1시간씩)
- 나라사랑카드에 소액 입금(귀가 등 유사시 필요)

용어설명

*나라사랑카드 : 병역판정검사 시 발급받아 병역판정검사 후부터 현역 및 보충역 근무, 예비군 임무를 수행할 때 까지 각종 여비 및 급여를 온라인 지급하기 위한 전자통장인 동시에 병역증 및 전역증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스마트카드



현역 모집병의 경우 “모집하는 분야”는?



☑ 육군 모집분야

기술행정병(차량운전, 조리 등 110개 특기)

- 다양한 기술자격·면허, 전공과 관련 있는 군사특기에 복무

전문특기병(어학병 군악병 등 37개 특기)

- 특수한 자격·면허, 전공 또는 경력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사특기에 복무

동반입대병

- 친구,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훈련을 받고 같은 생활권 범위 내 부대에서 복무

직계가족복무부대병

-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가 복무한 부대 또는 복무중인 부대에서 복무
(지원가능 부대 :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31개 부대)

연고지복무병

- 생활 주수지 등 연고지에 위치한 전방부대에서 복무(지원가능 연고지 :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13개 지역)

취업맞춤특기병

- 고졸이하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기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해당분야의 기술병으로 군복무

카투사

-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군 소속의 육군 요원으로 미군들과 함께 군복무

☑ 해군·해병 모집분야

해군 일반·기술병 12개 계열, 동반입대병, 복무지역선택병, 전문특기병(군악병, 문화홍보병, 특전병, 심해잠수병, 통·번역병, 어학병, 전문정보병, 군종병, 지식재산관리병, 정보보호병, CBT병, SW개발병, 신기술융합연구병, 빅데이터분석병, 전문의무병, 미디어병, 위생관리병, 인공지능(AI)개발특기병), 취업맞춤특기병

해병 일반·기술병 6개 계열, 전문특기병(군악병),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취업맞춤특기병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안내 및 지원절차에서 확인 가능



☑ 공군 모집분야

일반·기술병 8개직종, 전문특기병(의장병, 군악병, 정보보호병, 특수임무군사경찰, 군견관리병, 영어어학병, 정훈병, 콘텐츠제작병, 식별보조병, 전문자격의무병, 교육훈련매체개발병, 비파괴검사병, 우주기상분석병, 운항관리병, 조리병, IT개발관리병, 무인항공기운용병), 취업맞춤특기병



현역 모집병의 지원방법 및 절차는?



☑ 지원일정 및 입영일

- 군별로 모집시기는 다르나 월말~다음 달 초 지원 가능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 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에 공지)
- 모집지원에서 입영까지 약 3~4개월 소요

☑ 지원방법

- 병무청 누리집을 통하여 지원서 작성 및 제출
- 지원서 작성시 본인의 전공, 자격증 등을 입력하면 자신의 지원 가능특기를 조회할 수 있음



공동인증서 없이 지원가능특기 확인방법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군지원→지원가능분야 검색

- 모집병 선발은 정해진 배점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나 육군 동반입대병 및 직계가족병, 연고지복무병은 전산 추첨으로 선발됨

☑ 인터넷 지원 요령

- 병무청 누리집 접속 → 병무민원 → 군지원 → 통합지원서 작성 → 로그인 → 지원서 작성
- 로그인 방법 : 공동인증서, 아이폰 또는 휴대전화 인증
- 1차 합격자 발표 후 수험표 출력 가능



챗봇 검색 키워드

모집병 신청, 모집병 합격 조회, 이번달 모집일정





'취업맞춤특기병'이란?



☑ '취업맞춤특기병'이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기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 분야에 기술병으로 군복무, 전역 후 취업 정보제공 등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모집분야

* 폴리텍·전문대·방송대·사이버대 포함

☑ 제도 장점

입영 전

-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자는 본인의 진로/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음(훈련비 지원)
- 기술훈련을 마친 후
 -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모집계획 범위 내)
 - 취업하게 되면 24세까지 현역병 입영을 연기할 수 있음

군 복무

- 복무 중에는 기술훈련 받은 분야에서 기술병으로 복무하며 자격 취득, 기술 숙련, 검정고시 응시 등 경력을 쌓으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음

전역 후

- 군 복무를 마치면 관련분야 취업지원 및 다양한 취업 정보 등을 제공받게 됨

입영 전(기술훈련)	군 복무	전역 후(사회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일학습병행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 기술병 군 복무 • 자격취득·기술숙련 등 자기개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역 후 취업지원, 정보제공 (취업컨설팅, 기업채용 등)





'카투사'지원 방법은?



☑ 카투사 지원자격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신체등급 1~4급)
- 영어어학성적이 정기시험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TOEIC	TOEIC Speaking	TEPS	TEPS Speaking	TOEFL IBT	G-TELP Level 2	FLEX	OPIc
780점 이상	140점 이상	299점 이상	61점 이상	83점 이상	73점 이상	690점 이상	IM2 이상
국내·외	국내·외	국내	국내	국내·외	국내	국내	국내

*어학성적은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

☑ 제출서류

- 어학성적표 사본 1부 : 국외 TOEIC 응시자, 국외 TOEIC Speaking 응시자, 국내·외 TOEFL 응시자
*국내 TOEIC 등 그 외 시험 응시자는 제출 필요 없음
- 성적조회 동의서 : 일본 TOEIC 응시자, 일본 TOEIC Speaking 응시자만 제출

☑ 선발일정 등

- 접수시기 : 7월 경
- 선발시기 : 9월 경
- 선발방법 : 입영희망월별, 어학점수대별, 지원자 분포비율을 적용,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무작위 추첨 공개선발
- 입영시기 : 선발된 사람은 지원시 작성한 입영희망월(다음해 1~12월)에 입영

☑ 유의사항

-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함



한국군에 근무하는 어학병 모집은?

- 신체요건-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 모집분야-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챗봇 검색 키워드

카투사 지원자격, 카투사 선발절차





현역병 입영한 사람이 귀가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훈련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입영신체검사(육군훈련소, 해·공군교육사령부, 해병대교육단 입영자에 한함)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군복무가 곤란하거나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귀가 조치하여 질병 등을 치유한 후 입영하도록 되어 있음

※ 입영판정검사 실시부대(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및 제2작전사령부 예하사단 전체)로 입영하는 경우 병무청 입영판정 검사 실시로 귀가 없음

입영신체검사 과정



※ 입영부대(군병원)의 사정 또는 입영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일자별 신체검사 과정이 다를 수 있음

귀가자에 대한 행정조치

치유기간 3월 미만

- 치유기간 경과 후 가장 빠른 입영일자로 다시 입영통지

치유기간 3월 이상

- 치유기간 경과 후 즉시 재신체검사 실시

치유기간 없이 귀가한 사람

- 즉시 재신체검사 실시

2회이상 반복귀가(치유기간 3월 미만으로 귀가한 사람이 치유기간 경과 후 다시 입영하여 재귀가한 경우)

- 치유기간 명시되지 않은 사람 : 즉시 재신체검사 실시
- 치유기간 명시된 사람 : 명시된 치유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 실시





현역병 입영한 사람의 훈련기간과 부대배치는?



☑ 육군 입영부대

- 육군훈련소, 6개 지역사단(31, 32, 35, 37, 39, 50사단)
-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5개) : 7, 12, 15, 21, 36사단
- 지상작전사령부 서부권(6개) : 3, 5, 6, 28, 51, 55사단

☑ 훈련기간

- 6주(신체·적성검사 1주 + 기본군사훈련 5주)
- 입영 1주차는 신체검사, 보급품 수령, 적성검사를 받은 후 2주차부터 5주간의 기본 신병교육을 받음
※ 5주간의 기본 신병교육과정 수료 후 심화 교육과정을 통해 부대별 특성에 맞는 전투 능력을 배양하고 있음(심화교육 과정은 부대 및 특기에 따라 교육기간이 다르며, 후반기 교육에 편성된 특기병의 경우 병과학교에 입교하면 교육수료 후 복무하게 될 부대로 전속됨)

☑ 부대 배치

- 육군본부 누리집 신병부대배치 조회
- 입영 2~6주차 확인 가능(입영부대마다 다름)



입영 후 아들이 군사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 육군 본부 누리집 방문

신병교육대 누리집(카페)운영

- 대한민국 육군(<http://www.army.mil.kr>) → 국민마당 → 신병사진보기
- 훈련병 사진 탑재, 훈련소 생활 소개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아들에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인터넷 편지작성이 가능함





입영 후 첫 면회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신병훈련 수료식 후 훈련병의 영외(군부대 밖)면회 실시

신병교육대 누리집(카페) 운영

- 면회 일정은 부대로 상이, 각 부대에서 안내되는 일정에 따라 면회 실시
- 자대배치 되면 면회 가능



특수병과(의무·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하는 방법은?



☑ 지원대상

※ 공통사항 :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로서 장교임용 결정 사유가 없는 사람

의무사관후보생

- 의사(치과과 의사·한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법무사관후보생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군종사관후보생

-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 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수의사관후보생

- 수의과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 특수병과 사관후보생의 선발 및 병적관리

의무·법무·수의 : 병무청장이 선발, 지방병무청장이 병적편입·관리

- 의무 : 지원서(신원진술서 등 포함)를 수련기관의 장을 경유, 병무청장에게 군전공의 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제출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여 병적 편입된 사람은 취소불가
- 법무 : 지원서(신원진술서 등 포함)를 법학전문대학원장을 경유, 병무청장에게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제출
- 수의 : 지원서(신원진술서 등 포함)를 수의과대학장을 경유, 병무청장에게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이 되는 해의 5월31일까지 제출

☑ 입영

구분	입영대상	역종분류 및 입교(입영)
의무사관 후보생	수련과정 수료자, 수련중단자, 연기사유 해소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장관이 군의장교에 대한 군소요 감안 역종분류 (입영하는 해 1.10일 기준 병무청 최종 신체검사에 의한 신체등급으로 역종분류, 통상 2월 중순) *현역 군의장교 분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군학생군사학교 입교(통상 3월초, 6주 교육 : 학군교 4주, 국군의무학교 등 2주) *보충역(공중보건의, 병역판정전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군훈련소 입영(통상 3월 중순, 3주 교육)
법무사관 후보생	법학전문대학원 이수자로 변호사자격 취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장관이 법무장교에 대한 군소요 감안 역종분류 *현역 법무장교 분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군학생군사학교 입교(통상 5월 하순, 9주 교육) *보충역(공익법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군훈련소 입영(3주 교육)
군종사관 후보생	국방부의 입영 계획에 따라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군학생군사학교 입교(통상 3월 중, 12주 교육) *보충역 없음
수의사관 후보생	수의과대학 졸업 후 수의사 자격 취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사관후보생과 동일함

💡 용어설명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 군에서 직접 양성하기 어려운 특수병과 분야의 현역장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사전에 선발·관리하여 적기에 충원하는 제도임

03

보충역

병무상담 척척~ AI 챗봇 '아라'와 함께하는 병역이행 길라잡이

-  사회복무요원이란?
-  사회복무요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절차는?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  질병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  사회복무요원과 개인정보보호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기준과 복무기관은?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정보는?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은?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전직”은?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사유는?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자격 및 편입절차와 복무기관은?
-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은?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는?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대상

-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수형·전공상 등 병역법에 의한 보충역

☑ 복무기간: 21개월(군사교육소집 기간 포함)

☑ 복무방법: 출퇴근 근무하며 복무기관장 지휘감독을 받음

☑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방법은?

구분	1차 본인선택	2차 본인선택
신청대상	소집대상자로 재학연기 또는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	소집대상자 전체
신청시기	전년도 11월	전년도 12월
신청방법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소집신청(선발)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선발)
선발방법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두어 선발	

* 소집대기자(연기종인자 제외)는 지방병무청에서 소집순서에 따라 직권통지

* 본인선택 접수시기, 선발기준 등은 변동가능 하오니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군사교육소집기간 : 30일 이내

- 군사교육소집은 부대에 입영하여 군사훈련을 받는 것
- 교육 내용 : 제식훈련, 경계, 사격, 행군, 화생방, 각개전투, 수류탄, 정신교육
※ 훈련병들의 상태와 체력에 맞게 훈련의 강도 조절

군사교육소집제외자

정신과 4급 판정자, 문신/자해 4급 판정자 중 정신과 3급 포함자,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된 사람 중 치유기간이 통틀어 6개월 이상 경과자 등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교육의 종류

구분	복무기본교육		복무지도교육			직무교육
	기본과정	디딤과정	나래과정	새롬과정	이음과정	
주관	병무청		병무청			중앙행정기관
내용	정신자세, 책임의식, 봉사정신 함양	사회진출 역량 함양, 사회복귀 지원	복무규정위반 예방과 성실 복무 유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및 복무 적응능력 배양
시기	소집 후 3개월 이내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수료 후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수료 후 복무지도대상 발생시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수료 후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수료 후	소집 후 3개월 이내
기간	4박5일(합숙)	2박3일(합숙)	2박3일(합숙)	4박5일(합숙)	2박3일(합숙)	1~2주

교육장소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



챗봇 검색 키워드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회복무연수센터 가는 방법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절차는?



☑ 복무기관 재지정(변경)제도

동거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질병·심신장애 등으로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복무기관을 변경하여 복무하는 것

☑ 처리절차



☑ 신청방법 : 복무기관장에게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작성 신청

☑ 구비서류

- 주소지 이전 : 주민등록표 등본
※ 지방병무청장이 G4C를 통하여 주민등록지 이전 사항 확인으로 같음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의료기관 진단서

☑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기준(복무기관 재지정 가능 요건)

- 정기 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 정기 노선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km를 초과하는 지역
- 정기 노선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
- 기타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질병, 심신장애로 복무기관을 재지정 할 수 있는 임무 (해당 분야의 업무배제)

- 기관지천식 : 안전사고의 예방·관찰·지도(철도·지하철 안전관리)
- 아토피성피부염 : 산불·녹지 보호 및 감시
- 척추질환 : 시설경비, 산불·녹지 보호 및 감시, 119응급구조 및 환자이동, 안전사고의 예방·관찰·지도(철도·지하철 안전관리)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유치원 초·중·고 장애학생 활동지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사람 또는 1개월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한 분야
※ 2개 이상의 복무분야가 있어 자체 조정이 가능한 복무기관은 제외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제도

복무기관 재지정원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대상 : 복무기관 재지정 처리결과(거부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제출기한 : 부결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방법 : 사회복무포털, 우편송부, 팩스전송, 지방병무(지)청 방문
- 접수처 : 지방병무(지)청
- 제출서류 :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 관련증빙서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복무이탈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장복무, 고발 등 조치,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복무규정위반자 사유별 처리기준

구분	처리기준	비고
복무이탈 (법제33조)	통산 7일 이내 복무이탈	• 이탈일수의 5배수 연장복무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	•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명령위반 (법제33조)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회 이내 경고 :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무 • 4회 이상 경고 : 고발 (1년 이하의 징역) ☞ 다만, 경고받은 사유에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 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경고 시 고발(*24.5.7.시행)
	병역법 제32조의3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다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때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 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	
복무의무위반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개시 시간 후에 출근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회 이내 경고 :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근무 • 8회 이상 경고 : 고발 (1년 이하의 징역)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때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에 서수학하는 행위,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경고시마다 계속하여 5일간 연장근무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복무지도 교육 중 대리 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 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근무기강문란 (법제33조)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의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복무의무 위반 사례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법 제33조 제2항에 규정된 복무의무를 위반하면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됩니다.
아래는 최근에 복무의무를 위반하여 경고처분된 사례입니다.

- ① 복무기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고 사후에 병가서류 제출하여 병가 요구
- ②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병가 증빙서류로 제출
- ③ 근무시간 중 복무지를 이탈하여 친구를 만나는 등 사전에 허가없이 무단이탈
- ④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 ⑤ 남은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하였을 때 복학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집해제 전이라도 복학이 가능하나 남은 연기일수 만으로 복학이 불가능 함에도 복학하여 수학
- ⑥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아동, 노인, 장애인) 폭행한 경우(형법 상 고발대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질병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 질병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려운 경우 활용 가능한 제도

병역처분변경원 제도

복무 중 질병, 수형, 전·공상,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체검사 결과 또는 감면사유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제도

- 신청방법 : 복무기관장에게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작성 신청
- 구비서류
 - 질병 : 병무용진단서
 - 전·공상 : 국가유공자 증명원
 - 수형 : 판결문사본, 형확정증명서, 수용증명서
 - 생계유지곤란 : 가사상황신고서 등 병역감면 서류

분할복무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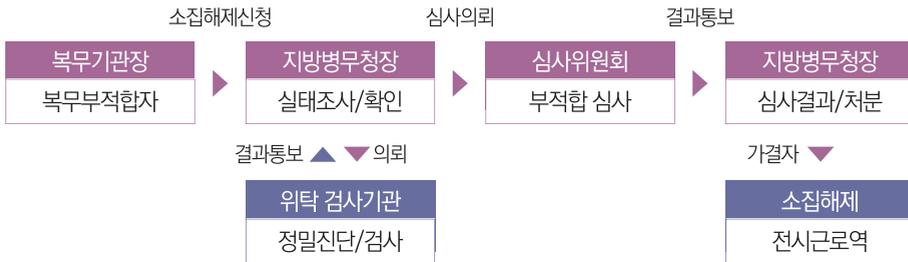
복무 중 질병치료나 생계지원, 가족의 간병 등 가사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일정기간 복무중단 후 재복무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기간 : 통산 6개월 범위 내(본인 질병치료 경우는 복무중단 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그 치료기간 만큼 추가로 분할복무 가능. '22. 6월 시행)
- 신청방법 : 복무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신청서'작성 신청
- 구비서류
 - 질병 : 별지 제106호 서식의 병무용진단서(1개월 이상 치료기간 명시)
 - 질병 이외 : 기타 분할복무사유 증명서류
- 재복무
- 복무중단 기간 종료일 다음날 복무기관장에게 재복무 신고
 - ※ 복무중단 만료일 이전에 재복무를 원하는 경우 복무기관장을 경유하여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제도

질병·심신장애, 수형, 근무기강문란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전시근로역)처분

• 처리절차



• 신청방법 :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



사회복무요원과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국민의 사생활과 안전, 그리고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스팸문자나 보이스 피싱, 나를 사칭한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
- 사회복무요원은 공익적 목적의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 수행자로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기준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하는 경우

- 직원의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시스템 접근하거나 직원이 시스템에 접속하고 사회복무요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등은 법 위반 행위에 해당
- 사회복무요원 별도 계정 발급, 비식별 조치, 유출 방지 등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복무기관장의 승인 후 담당직원의 관리 감독 하에 취급 가능
 - * (비식별 조치) 정보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예시 : 데이터 마스킹, 가명처리, 데이터 삭제 등)
 - * (안전성 확보) 접근권한 최소 부여, 불필요한 접근 통제, 암호화, 접속 기록 보관 및 월 1회 이상 교육·점검 등

정보시스템 접근없이, 즉 종이문서 등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근무지의 장 승인 후 담당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업무 지원 가능
 - *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유출방지 지도·점검 및 교육 월 1회 이상 실시, 민감 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동 시 밀봉, 보안준수 확인서 작성 등 안전장치 마련

☑ 개인정보보호 위반 시 처벌

사회복무요원

대상	처벌	관련 법률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열람한 경우	1회 위반 시 경고 및 5일 연장 복무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병역법
복무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역법

복무기관 담당자

- 개인정보 취급 업무 관리감독 소홀(단,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제외)
 - ☞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양벌규정) 7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기준과 복무기관은?



☑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 신청대상(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학력	복무기관 / 편입대상
석사이상 학위취득자(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 기업부설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 등 / 채용된 근무자
•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자(군전공의 과정 중 별도 신청)	• 자연계대학원 / 교육부 선발전형 합격자 (보충역은 지원자격 충족시 선발) • 과학기술원 / 과학기술원 자체 선발자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자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인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도 편입이 가능함

- 의무복무기간 : 3년(박사과정 수학기간은 불포함)

☑ 산업기능요원

현역입영대상자(의무복무기간 : 34개월)

- 신청대상 : 학력에 맞는 국가 기술자격 / 면허를 가진 사람(대학원 학력자는 신청불가)
- 학력별 기술자격증 등급 기준표

학력	해당기술자격 등급
대학교 4학년 졸업	• 기사 이상 • 일학습병행자격L5
전문대 졸업 대학교 3~4학년 중퇴·휴학자	• 산업기사 이상 • 일학습병행자격 L3~L5
고졸이하자 대학교 1~2학년 중퇴·휴학자	• 기능사(기능사보 포함) 이상 • 일학습병행자격 L2~L5

※ '11년부터 특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 산업기능요원 제도 운영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복무기간 : 23개월)

- 편입요건

제조·생산분야	자격증 불필요, 학력 제한 없이 편입가능
정보처리분야	정보처리 관련 전공학과 또는 기술훈련 등 경력기간 2년 이상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빅데이터분석) 및 일학습병행자격(정보기술 분류 중목)] 소지자는 전공학과 또는 기술훈련 등 경력기간 1년 이상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신청방법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정보는?



☑ 병역지정업체 정보제공

전국 병역지정업체 조회 및 배정인원 확인

- '산업지원 병역일터' 누리집 » 병역지정업체 검색 및 공지사항
 - ※ '산업지원 병역일터'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병역지정업체 모두 조회 가능함
 - ※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에서 제도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산업지원 병역일터'(http://work.mma.go.kr)에서 구직 신청 및 채용공고 조회 가능

- 구직신청(e-병무지갑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로그인)



- 채용공고 조회: 업종별·지역별·역종별(현역/보충역) 검색 가능

용어설명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제도: 국가산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능인력을 지원하는 제도
- *산업지원 병역일터: 정확한 병역지정업체 정보제공과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누리집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은?



☑ 군사교육소집 시기

- 가급적 편입 후 6개월 이내
- 편입일자가 빠른 순으로 결정하되 의무자의 희망시기 반영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전문/산업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 군사교육소집 기간: 30일 이내

-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

☑ 군사교육소집 장소

- 육군훈련소 또는 지역방위사단 등



군사교육소집장소 안내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찾아가는길 → 군사교육소집부대 가는길

☑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임금 지급

- 병역지정업체 사규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 결정

☑ 군사교육소집 연기

- 연기사유
 - 질병, 주요업무, 가족 위독 및 사망 등
- 신청절차
 - 입영일 5일 전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신청서 제출



챗봇 검색 키워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 소집,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 연기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전직"은?



☑️ 당연전직(의무적으로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야 함)

-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또는 선정이 취소된 경우
-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

☑️ 승인전직(승인을 받고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길 수 있음)

- 일정기간(전문 : 1년6개월, 산업 : 6개월)이상 복무한 경우
- 통틀어 3월 이상 임금체불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 연구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부당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근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등

☑️ 전직절차



☑️ 전직이 안 되는 경우

-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
- 전직 시 핵심연구과제 중단 또는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 초래 시
-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분야 연구소 전직 시 핵심기술 유출위험이 있는 경우(전문연구요원)
- 인원배정이 제한된 대기업으로의 전직(산업기능요원)
- 대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의 전직(전문연구요원, '21.1.1.이후 편입자부터 적용)등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사유는?



☑ 편입취소 사유

- 근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전직대기기간 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 수학기정을 위반한 경우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등

☑ 편입취소 시 의무부과

-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해야함
- 잔여 복무기간 : 남은 복무기간은 복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 편입취소 유보

유보대상

-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사람

유보절차

- 출원기간 :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
- 구비서류 : 편입취소 유보원서 및 구제신청서 또는 소송제기 서류

유보결과 처리

- 적법·정당하게 해고된 경우 :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 위법·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 복직(본인이 원할 경우 전직)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자격 및 편입절차와 복무기관은?



전사·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임

☑ 업무흐름도



※ 업체정보 확인 : 산업지원병역일터(<http://work.mma.go.kr>)→업체 검색(승선근무예비역)

☑ 편입대상

-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 지정 교육기관 :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등 17개 학교
-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해운업분야 500톤 이상, 수산업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기로 결정된 사람
- 의무복무기간 : 편입된 날로부터 5년 이내 3년간 승선근무

☑ 제출 서류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3 서식)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9 서식)
-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복무기관(해운·수산업체)

해운업 분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외항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수산업 분야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은?



☑ 군사교육소집(기초군사교육) 시기

- 편입 후 최초 승선근무 전에 실시
- 승선 중 편입한 사람은 최초 하선한 때에 실시

☑ 군사교육소집(기초군사교육) 기간: 30일 이내

-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승선근무)기간에 산입

☑ 군사교육소집(기초군사교육)장소

- 해군 교육사령부(기초군사교육단)



군사교육소집장소 안내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찾아가는길 → 군사교육소집부대 가는길

☑ 군사교육소집(기초군사교육) 기간 중 임금 지급

- 해운·수산업체 사규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 결정

☑ 군사교육소집(기초군사교육) 연기

연기사유

- 질병, 주요업무, 가족 위독 및 사망 등

신청절차

- 입영일 5일 전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해운·수산업체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신청서 제출



챗봇 검색 키워드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는?



☑ 복무기간

-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항해사·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

TIP

승선근무 가능 선박
(해운업분야)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수산업분야)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

☑ 승선근무기간

-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
- 선원법에 따른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휴직기간
- 선원법 제62조 제5항,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4조에 따른 휴가일수
- 군사교육소집기간

☑ 이동근무

-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른업체로 이동하여 해당규모의 선박에서 승선근무가능
 1. 본인 희망(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 범위에서 가능)
 2.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3. 복무 중인 업체가 감선 등의 사유로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4. 해운업체등의 장(복무관리 담당자 포함)의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129조에 따른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위반 행위를 신고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5.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6.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서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박 매각
 - 선박관리업체 변경
 - 선박관리업체에 위탁(자회사를 설립하여 위탁한 경우 포함)
 -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하여 유급휴가가 종료된 후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희망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승선 또는 재승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다만, 해운업체 등의 장의 정당한 승선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한 사람은 제외)
- ※ 4.~6.까지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겸직금지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때에는 승선근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단,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음.
- ※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유급휴가 등) 중에 영리활동에 따른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간은 승선근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사유는?



☑️ 편입취소 사유

- 항해사·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본인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3년간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편입취소 시 의무부과

-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하여야 함
- 복무단축 : 남은 복무기간은 복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04

대체역

병무상담 척척~ AI 챗봇 '아라'와 함께하는 병역이행 길라잡이

 대체역 편입 신청방법은?

 대체역 편입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은?



대체역 편입 신청방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경우 대체역 편입 신청

☑ 신청 대상

- 현역병입영 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예비역, 복무만료 보충역
 ※ 30세까지 편입신청 가능(다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해당자는 30세 이상 신청 가능), 현역·보충역 등 복무 중인 사람 제외

☑ 제출 시기

-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 제출 방법

- 인터넷 신청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
-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방문
- 우편송부, 모사전송

☑ 제출 서류

- 대체역 편입 신청서(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

- ① 본인 진술서(신분증 사본 첨부)
- ② 3명 이상의 주변인이 작성한 진술서(신분증 사본 첨부)
- ③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 ④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 ⑤ 신도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⑥ 그 밖에 양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체역 편입 신청인에 대한 현역병 등 입영(소집) 연기

-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영(소집) 연기 조치
- 2회 이상 신청인은 입영(소집) 연기 제외
 ※단, 대체역 심사위원회 인정 시 입영(소집) 연기 가능



대체역 편입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신청인의 진정성을 판단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 편입 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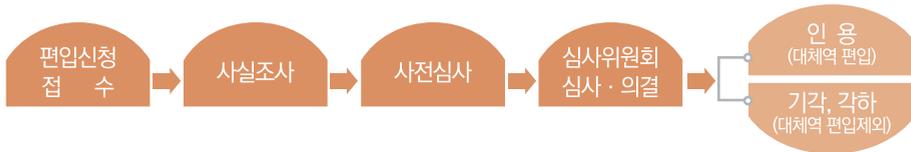
☑ 대체역 심사위원회

- 병무청 소속 위원회로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 등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

☑ 위원 구성

- 구성 :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11명 포함 총 13명
- 자격요건 :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그 밖에 대체복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추천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국회 국방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 처리절차



☑ 위원회 결정에 대한 구제

- 신청인이 위원회의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대체역 편입

- 신청인은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정하는 대체복무 기관에 소집되어 대체업무에 복무

☑ 복무관리 주체

- 소관중앙행정기관장(총괄 지휘·감독), 대체복무기관장(복무관리)
 ※ 병무청장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태조사 실시

☑ 복무기간/분야/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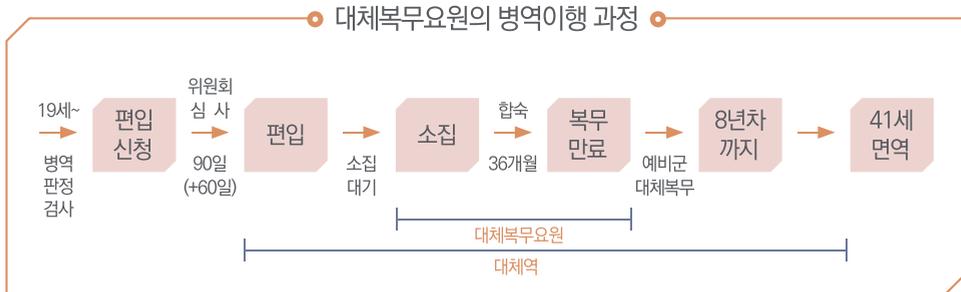
- 36개월/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분야/합숙복무

☑ 연장복무/제재

- 복무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 연장복무/8일 이상 고발
- 근무태만 선동, 가혹행위, 영리행위 등 경고 시 5일 연장복무/경고 사유에 따라 4회 또는 8회 시 고발

☑ 예비군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 복무만료 후 8년차까지 편성, 6년차까지 매년 3박4일 대체복무 실시 (예비군에서 대체역으로 편입한 사람 포함)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consisting of 20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05

병력동원훈련

병무상담 척척~ AI 챗봇 '아라'와 함께하는 병역이행 길라잡이

 병력동원훈련은?



병력동원훈련은?



☑ 예비군 편성은 언제까지 하나요?

- 예비역의 병,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은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해의 12월31일까지
- 예비역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현역계급 연령정년까지 편성됨

계급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정년	63	61	59	58	56	53	50	43	55	55	53	45	40

* 일반하사는 병에 준하여 편성

☑ 왜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 동원훈련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평시 전시임무를 숙달하는 훈련으로, 전시 임무 수행능력 배양을 통해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 소집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언제까지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 병은 4년차까지 동원훈련을 받게 되며,
-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6년차까지 동원훈련을 받게 됨

☑ 어디로 동원훈련을 받으러 가야 되나요?

- 동원훈련장소는 병무청에서 보내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통지서는 전자 우편, 모바일 앱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음
- 또한 병무청 누리집을 방문하여 동원훈련일자와 교통편 조회가 가능함

🗣️ 용어설명

* 예비군 : 전시·사변 등의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병력으로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현역군 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고, 적이나 무장공비 침투 등에 대비 지역방위체제 확립 임무를 수행



☑ 동원훈련 참가시 복장과 준비물은 어떻게 되나요?

- 복장 : 베레모(또는 전투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명찰, 방상외피(야전상의: 동계)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공인자격증 중 1개 지참
- 준비물 :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본인 계좌번호 숙지(여비 입금용), 세면도구, 수건, 속옷 등

☑ 대학생인데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 지역 또는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재학생은 예비군부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8시간)을 받게되며, 2박3일 동안 받아야 하는 동원훈련은 원하는 사람만 받음
- 그러나 휴학자,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나 유급자는 동원훈련을 받게 됨

☑ 동원훈련연기는 어떻게 하나요?

- 동원훈련 연기는 병무청 누리집·앱에서 신청하거나 통지서를 송부한 지방병무청에 팩스·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 동원훈련 연기 사유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 연기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동원훈련 무단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 동원훈련은 1회 무단 불참시에도 고발되므로 참석이 불가할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 해야함

☑ 전역 후에 교통사고로 다쳐서 예비군 훈련을 받기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고를 당해서 계속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기 힘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면 재신체검사를 통하여 예비군 복무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됨
- 재신체검사 결과 예비군 복무가 힘들다고 판정이 된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는 처분을 하게 됨

☑ 병역의무는 언제 종료가 되나요?

- 예비역 및 보충역병, 전시근로역, 대체역은 41세에 병역의무가 종료(면역)되며,
- 예비역 및 보충역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현역계급별 연령정년이 초과하면 병역의무가 종료(퇴역) 됨

06

기 타

병무상담 척척~ AI 챗봇 '아라'와 함께하는 **병역이행 길라잡이**

-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란?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제도란?
-  국외체재자 전자민원 출원제도란?
-  병무청 행정서비스 현장
-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①부양비 ②재산액 ③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 처분(전시근로역) 하는 제도

☑ 신청대상 및 제출시기

- 현역병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수시(20세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그해)
 - ※ 재학연기중인 사람은 재학연기 사유가 해소된 후 출원 가능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 복무중 수시

서류출원

- 현역병입영대상자와 현역병 복무중인 사람은 입영통지서를 발송한 지방병무청
- 그 외의 사람은 거주지 지방병무청

☑ 병역감면 처리기준

- 부양비 : 부양의무자 1인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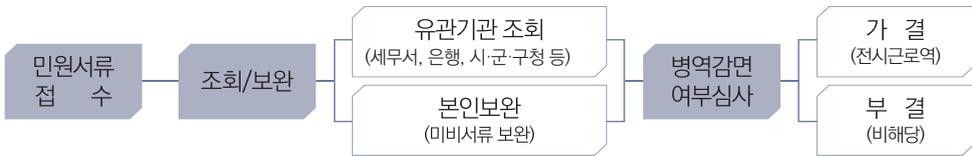
구분	부양의무자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자활가능자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연령	19세~59세	19세 미만, 65세 이상	60세~64세

- 재산액 :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전세금, 월세보증금, 현금, 예금액, 보험금 등
 - 2024년도 재산액 기준 : 9,480만원 이하
- 월수입액 :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 2024년 월수입액 기준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적용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원)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

☑ 병역감면 처리절차



☑ 제출방법

- 거주지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 송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제도란?



병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허가대상자

-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024년 기준 1999년 이전 출생자)
-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산업/전문요원, 공보의 등)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 여행목적별 허가 기간

단기여행

- 27세(국내 교육기관에서 28세까지 재학사유 입영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까지)까지
-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이내/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유학

-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 외국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이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까지

※ 학교별 제한연령

- 대학교 : 4년제는 24세, 5년제는 25세, 6년제는 26세(단, 의·치·한의·수의·약학과 대학은 27세)
- 대학원 : 석사 2년제는 26세, 석사2년 초과는 27세(단, 의·치·한의·수의·약학과 대학원은 28세), 박사는 28세

연수훈련

- 통틀어 2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국내 교육기관에서 28세까지 재학사유 입영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국외이주

- 37세까지(영주권 취득한 그 국가에서 3년이상 거주,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서 접수
- 인터넷신청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아이핀으로 로그인)
※ 국외에서 기간연장 허가 신청시는 관할 재외공관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가능. 단, 국외이주, 국외취업 사유로 허가 신청시는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함

☑ 허가절차

-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병역의무자) → 병역사항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처리(지방병무청) → 허가사항 전산입력 후 허가번호 부여(지방병무청) → 국외여행 허가(지방병무청) → 의무자 출국
※ 국외여행허가서는 인터넷(병무청 누리집 또는 민원24)에서 출력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는 허가 후 출국가능

☑ 허가제한 대상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기피자,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자,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 국외이주자로서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체재 또는 영리활동자, 병역의무 기피·감면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자, 신체 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



국외체재자 전자민원 출원제도란?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가 귀국 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의무 이행이 가능하도록 현지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출원대상자

- 국외체재(승선 포함)중인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국외불법체재자 제외)

☑ 민원신청 종류

-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신청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
- 국외체재자 입영신청(사회복무), 국외체재자 입영신청 취소(사회복무)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신청, 취소
 - ※ 종전 '국외체재자 입영신청'과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이 통합 일원화 됨
-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취소

☑ 출원방법 및 절차

- 우선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신청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영주권자 입영희망 민원신청
- 현역/사회복무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현역상근/사회복무 → 민원신청 종류 중 본인이 원하는 사항을 선택 출원
 -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아이핀으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처리결과 통보

- 국외체재중인 본인에게 E-mail로 통보하며 국내 친권자에게 우편이나 전화로 안내





병무청 행정서비스 헌장



병무행정 서비스 기준과 내용, 방법 및 절차,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보상조치 등을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

☑ 헌장구성

병역판정검사 등 9개 분야 35개 이행표준

※ 병무청 누리집 → 하단 '병무인원 헌장' 배너 확인

☑ 행정서비스 보상금

- 행정착오 및 민원처리 지연 등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 제도

〈행정서비스 보상금 지급 유형〉

- ▶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민원을 처리한 경우 : 5,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급
- ▶ 담당공무원 잘못으로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 10,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급
- ▶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 10,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급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 신고포상금 최대 2,000만 원 지급

주요 신고대상

- 병무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사항
- 병역면탈 행위(허위 정신질환, 허위 서류발급, 고의 체중조절 등)
- 복무 부실사항 등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 경미한 복무위반사항 제외
- 병역면탈 조장 정보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 신고자 절대 비밀 보장
- 포상금 5만 원 ~ 2,000만 원 지급

신고 방법

무료 전화: 080-070-9090 병무청 누리집: www.mma.go.kr

챗봇 검색 키워드

병역면탈, 복무부실



병무상담 척척- AI 챗봇 '아라'와 함께하는

병역이행 길라잡이

발행일 2024년 3월

발행처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Tel. 042-481-2678 Fax. 042-481-2679

인 쇄 금오디자인